

# 직장발전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운영지침 신규대비표(2024. 4. 1. 개정)

- 직장발전협의회 근로자위원 구성을 위한 선거구 획정시 여성 직원만을 대표하는 '여성부' 폐지
- 처 단위 이상 행정조직 선거구 획정원칙의 예외 근거 마련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14조(선거권)</p> <p>① 생략</p> <p>② 제17조에 의한 여성부에는 여성 직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다.</p> <p>③ 선거권을 가진 자는 투표 시 본인이 소속된 선거구 내에서 1인 1투표권을 가지며, 모든 여성 직원은 본인 소속 선거구 외 여성부에 한하여 1인 1투표권을 추가로 가진다.</p> <p>④ 생략</p>	<p>제14조(선거권)</p> <p>① 현행과 같음</p> <p>② <del>제17조에 의한 여성부에는 여성 직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다.</del></p> <p>③ 선거권을 가진 자는 투표 시 본인이 소속된 선거구 내에서 1인 1투표권을 가진다. <del>모든 여성 직원은 본인 소속 선거구 외 여성부에 한하여 1인 1투표권을 추가로 가진다.</del></p> <p>④ 현행과 같음</p>	
<p>제15조(피선거권)</p> <p>① 생략</p> <p>② 제17조에 의한 여성부에는 여성 직원에게만 피선거권을 부여한다.</p>	<p>제15조(피선거권)</p> <p>① 생략</p> <p>② <del>제17조에 의한 여성부에는 여성 직원에게만 피선거권을 부여한다.</del></p>	여성부 폐지에 따른 삭제
<p>제17조(선거구의 획정)</p> <p>① 선거구는 대학 '직제규정'에 의한 행정조직을 기준으로 직원 인적구성, 직원 수, 지리적 근접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공고를 통해 확정한다.</p> <p>1. 생략</p> <p>2. 선거구는 '직장발전협의회 운영규정' 제4조에서 정하는 근로자위원 수와 동일한 수의 선거구로 획정하되, 이 중 한 개의 선거구는 여성 직원만을 대표하는 여성부로 구성한다.</p>	<p>제17조(선거구의 획정)</p> <p>① 선거구는 대학 '직제규정'에 의한 행정조직을 기준으로 직원 인적구성, 직원 수, 지리적 근접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공고를 통해 확정한다.</p> <p>1. 생략</p> <p>2. 선거구는 '직장발전협의회 운영규정' 제4조에서 정하는 근로자위원 수와 동일한 수의 선거구로 획정한다. <del>이 중 한 개의 선거구는 여성 직원만을 대표하는 여성부로 구성한다.</del></p>	

# 직장발전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운영지침 개정(안)

현행	개정(안)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17조(선거구의 획정) - 계속 3. 선거구를 획정할 때는 처 단위 행정조직 이하로 분할 할 수 없으며, 대학 '직제규정' 제2장의 기본 조직 상 "대학 및 대학원(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포함)"과 "부속기관 및 부설 연구소"는 처 단위와 동일한 하나의 조직 단위로 본다.</p>	<p>제17조(선거구의 획정) - 계속 3. 선거구를 획정할 때는 처 단위 행정조직 이하로 <b>분할하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며</b>, 대학 '직제규정' 제2장의 기본 조직 상 "대학 및 대학원(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포함)"과 "부속기관 및 부설 연구소"는 처 단위와 동일한 하나의 조직 단위로 본다. <b>단, 선거구별 직원 수의 차이 등으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거구를 조정할 수 있다.</b></p>	<p>처별 규모(직원 수의 차이로 인해 처 단위 선거구 획정이 어려운 경우 예외 조항 신설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p><b>부칙</b> <b>이 지침은 2024년 4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</b>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(별표1) 선거구의 명칭 및 대상조직 양식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22 861 1065 1206"> <thead> <tr> <th>선거구 명칭</th> <th>대상조직</th> <th>소속 인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제1선거구</td> <td></td> <td>00명</td> </tr> <tr> <td>제2선거구</td> <td></td> <td>00명</td> </tr> <tr> <td>제3선거구</td> <td></td> <td>00명</td> </tr> <tr> <td>제4선거구</td> <td></td> <td>00명</td> </tr> <tr> <td>제5선거구(여성부)</td> <td>전 여직원</td> <td>00명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선거구 명칭	대상조직	소속 인원	제1선거구		00명	제2선거구		00명	제3선거구		00명	제4선거구		00명	제5선거구(여성부)	전 여직원	00명	<p>(별표1) 선거구의 명칭 및 대상조직 양식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179 861 2122 1206"> <thead> <tr> <th>선거구 명칭</th> <th>대상조직</th> <th>소속 인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제1선거구</td> <td></td> <td>00명</td> </tr> <tr> <td>제2선거구</td> <td></td> <td>00명</td> </tr> <tr> <td>제3선거구</td> <td></td> <td>00명</td> </tr> <tr> <td>제4선거구</td> <td></td> <td>00명</td> </tr> <tr> <td>제5선거구(여성부)</td> <td><b>전 여직원</b></td> <td>00명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선거구 명칭	대상조직	소속 인원	제1선거구		00명	제2선거구		00명	제3선거구		00명	제4선거구		00명	제5선거구(여성부)	<b>전 여직원</b>	00명	
선거구 명칭	대상조직	소속 인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1선거구		00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2선거구		00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3선거구		00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4선거구		00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5선거구(여성부)	전 여직원	00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선거구 명칭	대상조직	소속 인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1선거구		00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2선거구		00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3선거구		00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4선거구		00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5선거구(여성부)	<b>전 여직원</b>	00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